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발의자: 김지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, 청년사업 대상에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,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연령 범위 확대(안 제2조)

나.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안건은 “청년”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, 청년사업 추진·지원 사업을

구체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현행 “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람”에서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사람(“청년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)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6조(청년사업 추진·지원)에서는 “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”을 추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청년”의 정의를 따라 해당 조례로 지원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우리 구(區)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아울러, 청년사업 지원에 “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”을 추가하는 사항은 현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“청년1인 창업지원실”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장시키고,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- 또한, 관계법인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(청년 창업지원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사업 추가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1. .

발 의 자: 김지연·임현호·이규선
최봉희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, 청년사업 대상에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,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연령 범위 확대(안 제2조)

나.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6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행령,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람 중”을 “시행령, 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사람으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,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삭 제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6조(청년사업 추진·지원)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시행령, 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사람으로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청년사업 추진·지원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</p>